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0
----------	-----

2014년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3일
- 다. 상정결과 : 제25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12월 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김 영 한)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가치제고 및 활용 증진,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14.7.8.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규정을 보완·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상승분에서 5% 초과상승분으로 확대 (안 제32조)
-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

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를 유예 (안 제90조의2)

-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안 제4조제6항, 제26조제5항제3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4항, 제36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 태 식)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개정(2014.7.8. 시행)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치제고 및 활용 증진과,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관련 규정을 금번에 보완·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가. 사용료·대부료 감액조정 요건의 완화(안 제32조)

- 관련법령(법 제3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액조정 요건을 현행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서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로 완화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조정 요건관련 법 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상의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액조정 요건¹⁾보다 공유재산 관련 감액요건이 더 높았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한 것임.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2.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 동 개정조례안도 상위법에서 개정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액 조정 요건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규정상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감액조정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번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액조정 요건의 완화를 통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발생하게 될 세입감소 규모는 연간 총 50건에 1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어, 세입감소 규모가 크지 않고, 사용료·대부료의 상승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사용료·대부료의 감액조정 요건 완화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추정치〉

구 분	감액 대상 수 (건)	감액 금액 (천 원)
사 용 료	21	9,095
대 부 료	29	1,626
합 계	50	10,721

나. 변상금 징수유예 도입(안 제90조의2 신설)

- 시행령 제81조제4항2)의 신설에 따라 해당 규정을 반영하여, 변상금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기간인 1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법 제80조는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하여 무단점유를 한 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변상금에 대한 징수유예요건을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유예제도는 변상금의 감액·감면 조항이 아니며, 징수를 1년 동안만 연기해 주는 것으로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인바, 불가피하게 변상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행과정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행정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제6항 단서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3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9항”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9항”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0조제2항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100분의 30범위내에서”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로 하며, 같은 항(제4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제32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100분의 10을”을 “100분의 5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 개정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시행 후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유료, 대부료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p> <p>①~⑤ (생략)</p> <p>⑥ 심의회 운영·기능 및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p> <p>①~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제 7 조 제 7 항 ----- ----- ----- ----- -----.</p>
<p>제26조(대부료의 요율)</p> <p>①~④ (생략)</p> <p>⑤ 1.~2. (생략)</p> <p>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p>	<p>제26조(대부료의 요율)</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1.~2. (현행과 같음)</p> <p>3. ----- 제 1 3 조 제 5 항 ----- ----- -----</p>
<p>제30조(대부료의 감면)</p> <p>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p>	<p>제30조(대부료의 감면)</p> <p>① ----- 제 1 3 조 제 9 항 -----</p>

현 행	개 정 안
<p>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3. (생략)</p> <p>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p> <p>1.~ 3. (생략)</p> <p>③ (생략)</p> <p>④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u>〈신 설〉</u></p> <p>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p> <p>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p> <p>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p> <p>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p>	<p>----- ----- -----.</p> <p>1.~ 3. (현행과 같음)</p> <p>② -----제13조제9항</p> <p>----- ----- ----- -----.</p> <p>1.~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100분의 30 범위 내에서</p> <p>-----.</p> <p>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p> <p>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p> <p>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p> <p>----- -----</p>

현 행	개 정 안
<p>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p>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00분의 5 ----- ----100분의 5를 ----- ----- -----.</p> <p>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3조제6항 ----- ----- ----- -----.</p>
<p>제90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u>〈신 설〉</u></p>	<p>제90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u>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u></p>